

충청북도소비자보호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0. 4. 19

제 출 자 : 이 완 영 의원

1. 수정이유

- 충청북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추가하고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함

2. 주요 골자

- 충청북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추가
 - 소비자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사업타당성 및 보조금 지급의 적정성 판단에 관한 사항
- 불합리한 사항 조정
 - 충청북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을 명확히 함.
 - 당연직 : 위원장과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부서의 장
 - 위촉직 : 소비자문제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자, 소비자대표, 사업자대표

충청북도소비자보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소비자보호조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4조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단체의 사업타당성 및 보조금 지급의 적정성 판단에 관한 사항

안 제25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위원장은 경제통상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소비자 문제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, 소비자대표, 사업자대표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.

신 · 구 조문 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<p>제24조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략) 2. (생략) 3. (생략) 4. (생략) 	<p>제24조(심의사항)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 제1호와 같음) 2. (현행 제2호와 같음) 3. (현행 제3호와 같음) 4. <u>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 단체의 사업타당성 및 보조금 지급의 적정성 판단에 관한 사항</u> 5. (현행 제4호와 같음)
<p>제25조(구성) ①(생략)</p> <p>②위원장은 경제통상국장이 되고 <u>위원은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부서의 장과 소비자 문제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, 소비자대표, 사업자대표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③ (생략) ④ (생략) 	<p>제25조(구성) ①(현행 제1항과 같음)</p> <p>②위원장은 경제통상국장이 되고 <u>당연직 위원은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소비자 문제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, 소비자대표, 사업자대표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③ (현행 제3항과 같음) ④ (현행 제4항과 같음)